

답 변 서

사 건 2009아 1521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원 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 고 종로경찰서장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의 경위

피고는 원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로부터 2009. 5. 19. 참가인원 : 50명, 개최 목적 : 반미연대집회, 개최일시 : 09. 6. 16. 09:00~19:00간 광화문 한국통신 앞 인도상에서 개최 하겠다는 옥외집회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집회 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일 날짜 및 장소에 '상품 홍보 및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을 개최 하겠다며 KT광화문 지사에서 09. 4. 17. 既 신고를 해 놓은 상황으로,(소갑제2호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2항(장소경합)에 근거하여 09. 5. 20. 13:00경 행정처분(옥외집회금지통고)을 하였습니다.(소갑제3호증)

2. 처분의 적법성

가. 금지통고처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동일한 날짜에 비록 KT광화문 지사에서 신고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07년부터 진행해온 자신들의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던 사실이 전무한 점, KT광화문 지사가 현재까지 집회를 한번도 개최치 않은 점등을 살펴건데 09. 6. 16에도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와 KT광화문 지사의 집회는 집시법 제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반된 집회가 아니며, KT 광화문 지사 앞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선 신고 집회에 방해될 우려가 없고,

집회신고 당시 선 집회 취하서를 받도록 고지하는 등 안내절차가 없었으며, 신고 당시 형식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서등을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KT광화문 지사가 현재까지 집회를 한번도 개최치 않았으므로 09. 6. 16에도 개최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야 말로 원고의 확대 및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례로 민주 노총등 일반 시민·재야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 장소에 1~2개월 이상의 장소 선점 신고를 거치고도 단, 한차례도 집회를 개최치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원고의 주장 대로라면 이러한 단체들 모두가 방어 집회 신고를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며,(소감제4호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제정 목적은 ‘선 신고 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고의 주장대로 KT 광화문 지사 건물 앞 인도의 폭이 넓은 것은 사실로서, (소감제5호중) KT 광화문 지사와 원고의 집회 신고 장소가 KT 광화문 지사 앞으로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장소를 나누어 집회를 진행 한다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 및 시위 진행시 방송차량, 음향기기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KT광화문 지사와 원고가 동일날짜 동시간대에 행사 진행시 양 단체 간 음향 기기등에 의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활한 집회 및 행사가 진행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특히 원고의 집회 신고당시 피고측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출타 중이었던 관계로 민원실 관계자가 정보과 옥외집회 신고담당자의 휴대폰(공용,010-4935-5346)으로 전화를 걸어와 원고측 신고자와 통화를 하면서 취하서 및 금지통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소감제6호증)

또한 행정 절차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주장은 집시법 제7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중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집시법 제8조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원고의 집회 신고는 09. 5. 19. 14:15경 당 서 민원실에 접수, 당 서의 행정처분 시간은 09. 5. 20. 13:00경 전후로서 원고의 신고와 행정처분 시간은 약 24시간 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는 등, 취하서를 접수받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집시법에 근거하여 보완과 금지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시각을 다투는 경찰의 업무 특성상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에 임박하여 보완·금지통고 처분을 하는 사례는 전무하며 통상적으로 보완은 8~9시간 내, 금지는 24~36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례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집시법의 규정과 경찰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소 결

원고가 비록 수년에 걸쳐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집회를 진행하여 왔고, 경찰로부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상기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하여 09년부터 집회신고 및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지통고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번 경찰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1. 을 제1호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회신고서
- 1. 을 제2호증 KT광화문지사 집회신고서
- 1. 을 제3호증 옥외집회금지통고서
- 1. 을 제4호증 민주노총등 재야·시민단체 신고현황 및 개최현황
- 1. 을 제5호증 KT광화문지사 건물 전면 사진
- 1. 을 제6호증 5. 19자 민원실 통화 내역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1. 소송수행자 지정서 1통
- 1. 위임장 1통

2009. 6. 4.
피고의 소송수행자
송 현 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 귀중